

食品衛生法 施行令 一部 改定

대통령령 제11,717號(85.6.29)

調 査 部

식품위생법 시행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6 조 본문 단서 및 동조 제 1 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주체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았거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영업자는 제외한다.

- 상시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영업자,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통조림·병조림을 제조하는 영업자,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을 제조하는 영업자, 유가공품제조업·유처리업 또는 식육제품 제조업을 하는 영업자는 제 7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1종 식품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한다.

제 7 조 제 2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의 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대학에서 약학·식품가공학 또는 식품화학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하며, 유가공품제조업·유처리업 및 식육제품 제조업에 있어서의 식품위생관리인은 수의사의 자격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

제 7 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7 조의 2(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 법 제19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식품위생관리인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 원료검사 및 제품의 출하전 검사
- 사용하는 기구·용기와 포장의 규격기준 등 검사.
- 표시기준의 적합여부 확인
- 규격기준등 위반제품에 대한 처리
-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비치
- 총업원의 건강관리 및 위생강습 실시
- 기타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 9 조제 1 항제 1 호의 2. 제 2 호. 제 8 호. 제12호. 제19호. 제20호. 제27호. 제35호 내지 제38호. 제40호. 제44호. 제46호 및 제47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조동항 제 1 호중 “제 1 호의 2. 제 2 호 내지 제 5 호의 영업”을 “제 3 호 내지 제 5 호의 영업”으로 제 3 호중 “살롱·요정등”을 “살롱·룸살롱·요정과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간이주점등”으로, 제16호중 “단일식물을 주원료로 제조하여”를 “식물성식물을 주원료로 제조하여”로, 제23호 중 “과당”을 “과당·엿류”로, 제24호중 “간단한 조리방법(가열, 물에의 용해등)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특별한 온도조정이 없어도 보존성이 높고 휴대·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간단한 조리방법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휴대·운반이 용이한 식품으로, 제26호중 “식육 또는 어패류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조미하여”를 “식육·어육 또는 패육을 건조하거나 조미하여”로 하며, 동조동항제13호, 제25호 제30호. 제31호. 제32호. 제34호. 제42호. 제43호 및 제4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동항에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식용유지제조업: 식물성 또는 동물성유지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어유(간유)를 제조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 조미식품제조업: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맛을 들구기 위하여 사용되는 장류·식초 기타 조미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 식품가공업: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절단하여 포장(농어민과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단순히 절단하여 포장하는 것을 제외한다)하거나 분쇄 또는 혼합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식품의 제조·조리 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을 하는 자가 제분을 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과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영업을 제외한다.

31. 유가공품제조업 : 분유·조제분유·탈지분유·연유·탈지연유·발효유·환원우유·버터·치이즈 등을 제조하는 영업과 우유등을 주원료로 하여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하여 조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 등 음료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32. 식육제품제조업 : 수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쏘세이지·베이컨·알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4. 식품판매업 : 식육·식용열음 또는 직접 마실 수 있는 유류제품등을 전문적으로 판매하거나, 음료 또는 성숙된 면류등을 위생적으로 제작된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과 식품·첨가물 기구·용기 및 포장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42. 식품냉동·냉장업 : 수산물을 제외한 식품의 냉동·냉장업을 말한다.

43.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류제품이나 수·조육류, 어꽤류 및 그 가공품등 부페·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8. 식품용기·포장지등 제조업 :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품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포장류와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물수건, 위생종이, 이쑤시개, 1회용 수저, 컵등을 제조하거나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9.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써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영업을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시설기준에 관한 협의)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조 제1항 제33호의 업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도지사가 제9조제1항 각호의 영업 중 제31호 및 제41호의 영업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소속 식

품위생업무 담당보조기관과 축산업무 담당보조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의 3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식품판매업
2. 응기류 제조업

제12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원료수급계약서(유가공품제조업·유처리업·식육제품제조업에 한한다.)

③ 도지사가 제9조제1항제7호, 제9호, 제11호 제14호, 제15호, 제22호(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 제23호, 제31호, 제32호 및 제41호의 영업을 허가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사회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제9조제1항제10호, 제14호, 제15호, 제18호, 제26호 및 제30호의 영업중 수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영업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 및 생산실적을 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중 “제9조제1항제7호 내지 제27호(제13호의 경우에는 압착식용유 영업을 제외한다) 및 제30호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9조제1항제7호 내지 제26호, 제30호 내지 제32호, 제41호 및 제48호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

제14조제1호중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음식점 및 전문음식점 영업”을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으로 하고, 동조제2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일반유통음식점중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간이주점과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유통음식점은 제외한다.

제34조중 “제9조제1항제7호, 제9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영업외의 영업을 말한다), 제19호, 제20호, 제22호(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 제23호, 제27호, 제38호 및 제1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영업 이외의 영업”을 “제9조제1항제7호, 제9호, 제11호 제14호, 제15호, 제22호(인스탄트면류에 한한다), 제23호, 제31호, 제32호 및 제41호에 해당하는 영업외의 영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음식점영업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음식점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영 시행일로부터 2월이내에 이
영의 규정에 의한 대중음식점영업이나 유통음식점
영업중 일반유통음식점영업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영업허가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업종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표의 왼쪽란에 해당하는 영업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동표의 오른쪽 란에 해당하는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전	개정후
간이주점	유홍음식점영업(일반 유홍음식점)
엿류제조업	당류제조업
마아가린 또는 쇼트닝유 제조업	식용유자제조업

개정전	개정후
장류제조업, 식초제조업, 조미료제조업	조미식품제조업
가공유제조업, 유제품제 조업	유가공품제조업
유류판매업, 식육판매업, 식용얼음판매업, 식품자 동판매기영업, 식품등 수 입판매업	식품판매업
유류운반업, 식육운반업 물수건위생처리업, 젓가 락등 위생처리업, 식육등 포장지위생처리업	식품운반업 식품용기, 포장지 등 제조업

④(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영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에 종전의 축산물가 공처리법 또는 수산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영업자는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업종에 해당하는 업종의 영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동 영업자가 둔 자체검사월 또는 수산제조기사는 이 영에 의하여 신고된 석품위생관리인으로 본다.

신·구 조 문 대 비 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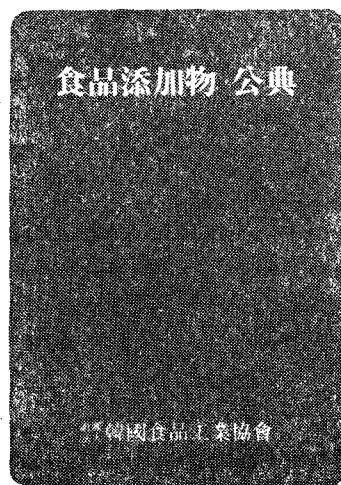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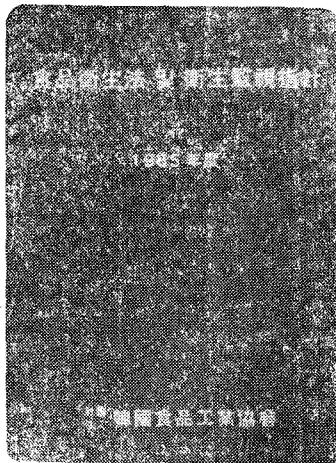
현 행	개 정 안
홍음식점(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캐바레, 나이트클럽, 고클럽등) 및 외국인전용 유홍음식점(외국인 및 외국인 선원등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유홍음식점 또는 무도유홍음식점 형태의 영업)을 말한다.	객석의 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간이주점등)
8. 엿류제조업 : 물엿 · 냉어리엿 또는 가루엿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8. (삭 제)
12. 마아가린 또는 쇼트닝유 제조업	12. (삭 제)
13. 식용유지제조업 : 식물성 또는 동물성유지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13. 식용유지제조업 : 다만, 어유(간유를 제조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16. 다투제조업 : 분말청량음료를 제조하는 영업과 단일식물을 주원료로 제조하여 물에 용해하여 음용하는 기호성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6. 다투제조업 :식물성물질을
19. 장류제조업 : 간장, 된장, 고추장 및 소오스류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19. (삭 제)
20. 식초제조업	20. (삭 제)
23. 당류제조업 : 설탕, 포도당, 과당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3. 당류제조업 : 설탕, 포도당·과당·엿류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4.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가열·물에의 용해등)으로 식용이 능가하며 특별한 온도조정이 없어도 보존성이 높고 휴대·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24. 인스탄트식품제조업 : 직접 또는 간단한 조리방법으로 식용이 가능하며 휴대·운반이 용이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으로서 다른 업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25. 조미료제조업 : 식품을 제조 또는 조리하는데 편리하도록 고추·후추·마늘류·겨자·캐비어 또는 이의 유사한 천연식품 자체를 원료로 하는 조미료를 제조하거나 마요네즈·케찹등 조미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5. 조미식품제조업 :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맛을 둑구기 위하여 사용하는 장류·식초 기타 조미료를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6. 전포류제조업 : 식육 또는 어폐류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6. 전포류제조업 : 식육·어육 또는 폐육을 전조하거나 조미하여 건조한 식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27. 가공유제조업 : 유제품을 주원료로 하여 이에 따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 조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27. (삭 제)
30. 식품가공업 : 식품원료를 추출·분쇄·혼합등의 방법으로 단순히 가공하여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식품의 제조·조리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을 하	30. 식품가공업 : 농산물·축산물·수산물등을 결단하여 포장(농어민과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 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단순히 결단하여 포장하는 것을 제외한다)하거나, 분쇄 또는 혼합등의 방

현 행	개 정 안
는 자가 제분을 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법으로 가공하여 식용할 수 있는 식품을 제조하거나 다른 식품의 제조·조리 등에 사용하는 중간제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양곡관리법에 의한 제분업을 하는 자가 제분을 하거나 가공위탁자로부터 제공받은 재료만을 사용하여 식품을 가공하는 영업과 수산업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영업을 제외한다.
31. 유제품 제조업 : 분유·조제분유·탈지분유·연유·탈지연유·발효유·환원우유·버어터·치아즈 등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1. 유가공품 제조업 : 영업과 우유등을 주원료로 하여 다른 식품 또는 첨가물을 첨가하여 조제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청량음료 또는 과채류 등 음료제조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다.
32. 식육제품제조업 : 짐승·쇠고기류를 주원료로 하여 햄·쏘세이지, 베이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32. 식육제품제조업 : 수육 또는 알을 주원료로 하여 햄·쏘세이지, 베이컨, 알가공품 기타 이와 유사한 것
34. 유류판매업 :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우유·산양유·가공유·유음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을 전문으로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4. 식품판매업 : 식육·식용열음 또는 직접 마실 수 있는 유류제품 등을 전문으로 판매하거나, 음료 또는 성숙된 면류 등을 위생적으로 제작된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과 식품첨가물·기구·용기 및 포장지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5. 식육판매업 : 수·조육류 및 그 가공품을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5. (삭 제)
36. 식용열음판매업 :	36. (삭 제)
37. 식품자동판매기영업 : 커피, 코코아, 청량음료, 우유, 성숙된 면류 등을 위생적으로 제작된 자동판매기에 넣어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7. (삭 제)
38. 식품등 수입판매업 : 식품·첨가물 등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8. (삭 제)
40. 젖유업 : 생유, 생산양유를 모아서 보존하는 영업을 말한다.	40. (삭 제)
42. 식품냉동·냉장업	42. 식품냉동·냉장업 : 수산물을 제외한 식품의 냉동·냉장업을 말한다.
43. 유류운반업 : 직접 음용할 수 있는 우유, 산양유, 가공유, 유음료 또는 이와 유사한 유류제품 등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3. 식품운반업 : 직접 마실 수 있는 유류제품이나 수·조육류, 어패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폐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4. 식육운반업 : 수·조육류, 어패류 및 그 가공품을 운반하는 영업을 말한다.	44. (삭 제)

현 행	개 정 안
46. 물수건 위생처리업 : 식품접객영업소의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물수건을 위생적으로 처리하여 포장공급하는 영업을 말한다.	46. (삭 제) 46. (삭 제)
47. 젓가락등 위생처리업 : 소독젓가락, 이쑤시개를 위생적으로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47. (삭 제) 47. (삭 제)
48. 식육등 포장지 위생처리업 : 식육, 어패류등을 판매할 때에는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특수포장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48. 식품용기 · 포장지등 제조업 : 식품 또는 첨가물을 넣거나 싸는 물건으로서 식품 또는 첨가물에 직접 접촉되는 용기 · 포장류와 손님에게 제공하기 위한 물수건, 위생종이, 이쑤시개, 1회용 수저, 컵등을 제조하거나 위생적으로 처리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 설)	49. 식품조사처리업 : 방사선을 써어 식품의 보존성을 물리적으로 높이는 영업을 말한다.
제10조 (시설기준에 관한 협의) 보건사회부장관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 9조제 1항제 15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영업에 한한다) · 제 31호 · 제32호 · 제40호 · 제41호와 제42호(수산물에 관한 영업에 한한다)의 업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농수산부장관과 제33호의 업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기준에 관한 협의) 제 9조제 1항제 33호의 업종에 관한 시설기준을 정할 때에는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 (영업의 허가 및 신고관청) ①법제23조의 제 1항 및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및 신고(영업장소 또는 시설의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행한다.	제11조 (영업의 허가 및 신고관청) ①.....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지사가 제 9조제 1항 각호의 영업중 제15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영업에 한한다). 제 31호 · 제32호 · 제40호 · 제41호와 제42호(수산물에 관한 영업에 한한다)의 영업허가를 할 경우에는 제 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농수산부와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3. 제31호 및 제41호의 영업허가를 할에 있어서는 소속식품위생업무 담당보조기관과 축산업무담당보조기관의 협의에 의하여 행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의 3 (영업의 신고대상업종) 법 제23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대상업종은 다음과 같다.	제11조의 3 (영업의 신고대상업종) 법 제23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신고대상업종은 다음과 같다.
1. (삭 제)	1. 식품판매업
2. 유류판매업	2. 음기류 제조업
3. 식육판매업	
4. 식용열음판매업	
5. 식품 자동판매기영업	
6. 식품등 수입판매업	

현 행	개 정 안
<p>전사회부령으로 정하는 음식점은 제외한다.</p> <p>2. 제 9조제 1항제 3호의 규정에 의한 유통음식점영업. 다만, 음식물을 조리하지 아니하는 유통음식점은 제외한다.</p>	<p>.....</p> <p>2. 다만, 일반유통음식점중 객석의 면적 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간이주점과 음식물을</p>
<p>제34조 (권한의 위임) 법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중 제 9조제 1규 제 7호, 제 9호, 제11호, 제12호, 제14호, 제15호(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영업외의 영업에 한한다). 제19호, 제20호, 제22호(인스타트면류에 한한다), 제23호, 제27호, 제38호 및 제11조제 1항제 3호에 해당하는 영업이외의 영업에 대한 제11조제 1항제 2호의 권한 및 법 제16조, 법 제23조 내지 제26조의 3의 권한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p>	<p>제34조 (권한의 위임).....제11호, 제14호, 제15호, 제22호(인스타트면류에 한한다), 제23호, 제31호, 제32호 및 제41호에 해당하는 영업외의 영업.....</p>

식품위생법규, 식품첨가물 공전 발간 배부안내



본회는 식품관련 업계, 학계 및 단체 등의 필수 서적인 '85년도판 식품위생법 및 위생감시지침(식품위생분야의 모든 법령 및 위생수칙 수록)과 식품첨가물 공전(최근까지 개정 고시된 규격기준 및 일반시험법 등 수록)을 한정판으로 발행, 아래와 같이 배부중에 있습니다.

아 래

- ▲ 식품위생법 및 위생감시지침 : 권당 7,000원
- ▲ 식품첨가물공전 : 권당 8,000원
- ▲ 배부처 : 한국식품공업협회 주소 : 서울·강남구 서초동 1174-4 전화 : 585-5052, 5053